

meritz 메리츠화재

(주)패밀리원(보험대리점)(19990977030003)
기업영업3부 02-1644-0539

9322632025091210029814320-3957



기업영업3부

1566-7711

대전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8, 관저요양원(관저동)



관저요양원

귀중

3 5 3 7 8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기본사항(실명확인필)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번호 14320-3957

계약자	관저요양원	증권번호	14320-3957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314-82-75648	청약일자	2025년 09월 11일
보험기간	2025년 09월 11일 24:00 부터 2026년 09월 11일 24:00 까지		
납입주기	일시납	납입 보험료	KRW 5,131,800

피보험자 사항

피보험자	관저요양원 (314-82-75648)	관계	본인
------	------------------------	----	----

전문직업

소재지사항	35378 대전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8, (관저동,관저요양원)		
업무설명	전문인배상	요양보호사구분	시설급여
산출기초	정원49명/현원49명		

담보사항		유형	환종	보장금액	환종	보험료
기본	전문배상책임(시설)	1청구당	KRW	100,000,000	KRW	3,668,958
기본	전문배상책임(시설)	총보상한도	KRW	100,000,000	KRW	3,668,958
기본	전문배상책임(시설)	공제금액	KRW	500,000	KRW	3,668,958
기본	보고연장기간					
기본	소급담보일자					

우리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본서류는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발행처 기업영업3부 (주)패밀리 10.13.61.51 발행일시 2025-09-12 17:39:27

발행번호 F2509123545

일반_증권_2016-0001

meritz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보험증권

meritz 메리츠화재

담보조건

보고연장기간

보고연장기간 : 60일

소급담보일자

소급담보일자 : 2025년 09월 11일

배상

소재지사항

35378 대전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8, (관저동,관저요양원)

목적물

노인요양시설

시설/업종설명

시설배상

산출기초

수용정원, 49명

담보사항

유형

환종

보장금액

환종

보험료

기본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_대인

1인당

KRW

200,000,000 KRW

1,325,482

기본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_대인

1사고당

KRW

500,000,000 KRW

1,325,482

기본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_대인

공제금액

KRW

100,000 KRW

1,325,482

기본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_대물

1사고당

KRW

10,000,000 KRW

122,982

기본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_대물

공제금액

KRW

100,000 KRW

122,982

목적물

음식물

음식물명

음식물배상

산출기초

매출액, [KRW]500,000,000

담보사항

유형

환종

보장금액

환종

보험료

특약

생산물 위험담보_대인

1청구당

KRW

30,000,000 KRW

14,467

특약

생산물 위험담보_대인

총보상한도

KRW

50,000,000 KRW

14,467

특약

생산물 위험담보_대인

공제금액

KRW

300,000 KRW

14,467

보험조건

적용약관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전문직업(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배상책임조항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생산물배상책임손해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부보장

테러위험부보장

우리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본서류는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발행처 기업영업3부 (주)패밀리 10.13.61.51 발행일시 2025-09-12 17:3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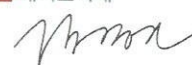
발행번호 F2509123545

일반_증권_2016-0001

2/4

meritz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보험증권

meritz 메리츠화재

담보지역 : 대한민국

재판관할권 : 대한민국

기타사항

비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적용
*본 증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 담보함을 안내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우리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본서류는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발행처 기업영업3부 (주)패밀리 10.13.61.51 발행일시 2025-09-12 17:39:27

3/4

발행번호 F2509123545
일반_증권_2016-0001

meritz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보험증권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

▶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다음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통신계약 : 녹취) 하지 않은 경우 보장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후 알릴의무	과거의 질병 및 치료사실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효력이 없으니 본인이 직접 기록하시기 바랍니다.(계약전/후 알릴의무, 사고발생의 통지 등 속지)
청약서부분(사본) 약관 및 증권 수령	청약서 부분과 약관은 꼭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내용 및 본인작성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수령 후 보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회사 소정의 영수증이 아닐 경우 보험료 납입여부를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은행 통장의 이체내역을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 최고와 계약의 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분)를 전달받지 못하였을 때 - 계약 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
계약의 취소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전화대기, 지정방문에 대한 불편없이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meritzfire.com



친환경 녹색경영 e-알리미서비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e-알리미 보관함을 통해 보험계약 및 대출관련 증권/약관, 안내문 등을 우편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 안전하다 안내문 분실 우려, 개인 정보 노출 걱정도 없습니다.
- 2 편리하다 증권/약관, 계약 안내문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3 빠르다 우편 안내문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상담 / 대출상담 / 사고접수

고객지원센터 1566-7711 | 사고접수센터 1566-4982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문의

- 메리츠화재 대표전화 : 1566-7711

●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민원상담 : (02)6464-3522/3535

- 홈페이지 : www.meritzfire.com > 초기화면 > 민원상담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 메리츠화재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 02-3707-8521 / 팩스 : 02-3707-8522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e-클린보험 서비스 (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증

※ 본 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제한금금 청구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회사소정의 영수증(실시간 이체계약, 초회보험료 자동이체 계약 제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단 기업영업3부
지점 기업영업3부
취급자 (주)매일리원(보험대리점)(19990977030003)/이광욱 (010-4920-4101)

우리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대표이사